

종교인소득자 신고



1 기본사항 작성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해 신고서는 신고안내유형이 Q, R이거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가능합니다.
-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정기신고]** 버튼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신고인 기본사항에 주소지전화, 휴대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납세자 정보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입력합니다.
- 수입금액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받으시고 **수정사항이 없으신 분은 '모두채움 적용여부'에 '여'를 체크**하고 세액 등을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입금액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받으시고 **수정사항이 있거나 신고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모두채움 적용여부'에 '부'를 체크**하시면 되며 앞으로 '부'로 체크하는 경우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하단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선택 칸에 체크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에서 직접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종교인소득신고서

● 종교인소득명세 **클릭!** →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NO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분	금액
(31) 총수입금액 : 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0 원
(32) 필요경비 : 필요경비 금액을 적용합니다.	0 원
(33) 종합소득금액 : (31) - (32)	0 원
(34) 소득공제 : ((35) - (45))의 합계에서 (46)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1,500,000 원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관계명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본인	태***	1	*****_*****

종교인소득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 소득명세를 입력하기 위해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교인소득명세 ✕

·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동일한 종교단체에 퇴단후 재입단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합해서 1건으로 입력합니다.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는 2건이상 입력 불가함)

· 종교인소득명세자료 입력 **클릭!** →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초기화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교유번호)		-	-	확인
수입금액	0	원천징수세액	0	

등록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일련번호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교유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76) 총수입금액	0	(77) 필요경비	0	(78) 소득금액	0
------------	---	-----------	---	-----------	---

닫기 적용하기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우측 상단의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 및 기타소득지급명세 불러오기

※ 아래 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자료제출처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누락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내용 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 불러오기

선택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종교단체명	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 불러오기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종교단체명	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input type="checkbox"/>	*****	****-**-*****	10,000,000	2,000,000

클릭!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직접 입력하기 ← 클릭!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실 경우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선택칸에 체크하신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는 경우 [직접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교인소득명세서자료 입력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초기화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확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등록하기 ← 1 클릭!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76) 총수입금액 (77) 필요경비 (78) 소득금액

닫기 적용하기 ← 2 클릭!

다시 종교인소득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실 경우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상단의 종교인소득명세서자료를 직접 입력 후 [등록하기] 및 [적용하기]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관계명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소독자 본인	개***	1	*****

클릭!

> 인적공제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5) 본인	1,500,000 원	(39) 장애인	0 원
(36) 배우자	0 원	(40) 부녀자	0 원
(37) 부양가족	0 원	(41) 한부모가족	0 원
(38) 경로우대자	0 원	인적공제 계(35~41)	1,500,000 원

(4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 적전 과세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범위 이내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4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44)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4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46)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7) 과세표준 : (33) - (34)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48) 세율

(49) 산출세액 : (47) x (48) - 누진공제액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 (51 ~ 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음은 인적공제대상자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인적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

※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삭제 후 추가입력에 주세요.
 ※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자동계산됩니다.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클릭!**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내외국인여부
<input type="checkbox"/> 800101-*****	개***	소독자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본인	1,500,000	5. 장애인	0
2. 배우자	0	6. 부녀자	0
3. 부양가족	0	7. 한부모가족	0
4. 70세 이상인 자	0	8. 인적공제 계	1,500,000

← **클릭!**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를 입력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4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 직전 과세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범위 이내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0 원
(4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도움말		0 원
(44)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4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계산하기 도움말		0 원
(46)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0 원
(47) 과세표준 : (33) - (34)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0 원
(48) 세율		6.00 %
(49) 산출세액 : (47) x (48) - 누진공제액		0 원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 (51 ~ 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0,000 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은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입력하고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은 개인연금저축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금액이 있을 경우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세액공제	(51-1)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도움말		<input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value="0"/> 명	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value="0"/> 명	0 원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input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value="0"/> 원		0 원
(53)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도움말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원	0 원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원	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0 원
(59) 가산세액 :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세액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항목에 기본공제 자녀 및 출산·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항목을 각각 입력합니다.
-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금액란에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도움말	0	0	0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0	0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0	0	0
(53) 기부금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도움말	0	0	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0	0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0	0
(54) 표준세액공제					70,000
(55)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0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10만원 초과		0
(57)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기				0
(58) 결정세액	(49) - (50)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0
(59)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용합니다.				0

클릭!

- 기부금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명세서 ✕

· 해당연도 기부명세 (단위: 원)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선택내용 삭제

No	기부금 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공제대상금액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건수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해당연도 기부명세에 입력된 자료는 기부코드 별로 합산되어 기부금 조정명세에 자동 입력됩니다.

· 기부금 조정명세 (단위: 원)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 선택내용 삭제

No	기부금 코드	기부년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를 클릭하면 추가로 기부금 이월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자동입력된 자료는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수정/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금 입력 시 기부금 코드와 기부년도 별로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먼저 해당연도 공제금액에 적용하고 남은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적용함

등록하기
닫기

-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시 제출된 기부금명세서를 불러오기 하고,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도움말	0 명 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0 명 0 원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3)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도움말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원	0 원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원	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59) 가산세액 :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및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이 있을 경우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됩니다.

클릭! →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환급금 계좌신고

-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CMA등 가상계좌 및 외국계 은행계좌 등으로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적정여부 검토후 6월말~7월초경 신고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환급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수령을 위한 금융기관정보 입력 시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행의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 플랫폼 전자신고 시, 신고서에 사전 작성된 항목 및 소득조치 자료는 신고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확인 후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상단의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
화면도움말

● 신고서내용 요약

소득자	태*** (*****-*****)	
귀속년도	2020	
신고유형	정기신고(40,비사업자)	
종합소득금액	0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0	0
산출세액	0	0
납부(환급)할 총 세액	0	0
납부특례세액차감	0	
납부특례세액가산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0	0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0	0

● 환급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	------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물리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 개인정보 제공동의

※ 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한 귀하의 전화번호, 환급 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자체(위택스)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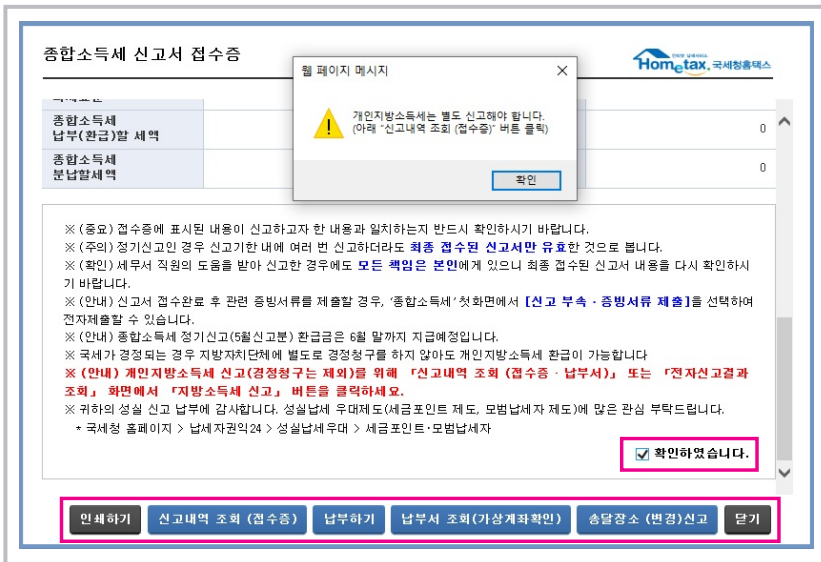
예 동의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 목록 ✕

- [납부할금액(원)]은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지방소득세 금액은 불포함)
- 납부할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납부기한이 지난 납부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의 납부서버튼 클릭시 지방세납부시스템(Wetax 또는 서울시 ETAX)로 자동 연계되어 납부서 출력 (연계 지연시 재접속 시도)
-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에서 전자번호조회납부, CD/ATM,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 은행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가능 (07:00~22:00)

주민등록번호	●●●●●-*****	☑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
성명	****	서울시 ETAX : 02-3151-3900 (평일 9~18시)
접수일시	2022-05-16 11:24:03	WETAX: 110번 (월~금 9~21시 토 9~13시)

※ 팝업창이 안 뜰 경우, [도구-팝업차단끄기] 설정 필요

과세연월	납부할금액(원)	납부기한	납부서	지방소득세
		2022-05-31		

-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대 1년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접부서유)>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서현황, 제출서시목록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 항목에서 'Y'로 조회됩니다.
- 상단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화면을 통해 부속·증빙서류 상세내역 확인 및 추가 제출 가능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반드시 신고기간 마지막 날 23시 30분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납부방법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년 1월 이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항목의 「신고이동」 버튼 이용)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장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해야 하나 국세가 결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환급됩니다.
- <납부여부> 항목은 전자신고 시 발급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만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음
- 19년 1월 이후 신고한 내역부터 <납부여부>가 조회되며, 신고서의 세액과 납부한 세액(분납 등 추가 납부서 포함)이 일치하는 경우만 'Y'로 조회 됨
- 납부한 이후 납부결과 반영에는 1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음(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

● 신고서 제출목록

• 신고일자 2022-03-07 ~ 2022-04-06

• 정보 공개여부 예 아니오 ※ 정보 공개 대상 : 신고내역의 상호(성명) 항목 ※ 접수증의 상호(성명),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항목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조회하기

총5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개별납부서 일괄 출력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개별접수증 일괄 출력
10건
확인

□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서보기)	접수여부 (원부서유)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납부여부	
□	2021년1월	종합소득	장기	장기소득	테스트	*****	*****	인터넷	2022-04-...	210-202	정상(안정)	보기	보기	x***	N	신고이동	진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버튼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